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이 투자설명서는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수익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02) 2071-9900

3. 판매회사

판매회사명	대표번호	판매회사명	대표번호
외환은행	729-8000	한불증권	777-7711
대우증권	1588-3322	한국투자증권	1544-5000
부산은행	1588-6200	신영증권	2004-9000
우리투자증권	1544-0000	우리은행	2002-3000
교보증권	3771-9000	대구은행	1588-5050
한국씨티은행	3455-2114	전북은행	(063) 250-7114
SK증권	3773-8245	삼성증권	2020-8000
동부증권	369-3000	HSBC은행	1588-17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7년 11월 12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제 1 쪽)

1. 명칭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A 수익증권/Class C 수익증권/Class I 수익증권 ■ Class C(W)수익증권/Class C(F)수익증권/Class C(E)수익증권/Class C(H)수익증권,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종류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 본문 제 2 ~ 5 쪽)

1. 투자목적	전세계적으로 700 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Allianz 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저평가 가치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Bottom-up 분석에 입각하여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상대수익가치 척도상 저평가된 기업, 높은 ROE와 견실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기업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종목 중 적극적으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잠재가치까지 시장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주주제안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 적극적인 기업가치향상을 유도하여 장기적 자본이득을 추구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변동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운용목적에 감안하여 3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홈페이지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우	69년생	이사	14개	3,367억좌	KPMG LLP 등 경력 12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Value-In-Action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연평균 수익률 >>

연도	최근 1년 (06.11.01~07.10.31)	설정이후 (06.08.18~07.10.31)
Class A	69.70%	84.67%
Class C	68.38%	82.91%
벤치마크	46.14%	49.59%

※ 벤치마크 = 90% KOSPI + 10% Call loan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 본문 제 6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I	ClassC(W)	ClassC(F)	ClassC(E)	ClassC(H)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법인전용	Wrap전용	펀드전용	인터넷전용	장기주택 마련저축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0%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¹⁾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 보수	연 0.855%	연 0.855%	연 0.855%	연 0.855%	연 0.855%	연 0.855%
		판매회사 보수	연 1.195%	연 1.995%	연 0.050%	연 0.000%	연 0.050%	연 1.795%
		기타보수	연 0.050%	연 0.050%	연 0.050%	연 0.050%	연 0.050%	연 0.050%
		보수합계	연 2.100%	연 2.900%	연 0.955%	연 0.905%	연 0.955%	연 2.700%
	기타비용	연 0.010%	연 0.010%	연 0.010%	연 0.010%	연 0.010%	연 0.010%	
	총 보수·비용 비율 ²⁾	연 2.110%	연 2.910%	연 0.965%	연 0.915%	연 0.965%	연 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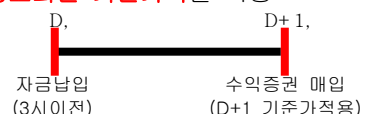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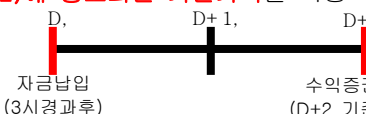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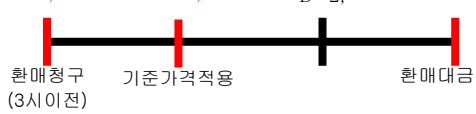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7.01.0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투자설명서 본문참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7.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A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C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I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C(W)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C(F)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C(E) 수익증권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Class C(H) 수익증권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종류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 2006.08.18 투자신탁 설정
 - 2006.09.18 투자신탁약관 변경 : 환매수수료 및 징수기간 변경
 - 2007.05.17 투자신탁약관 변경 : 환매수수료 징수기간 변경
 - 2007.11.12 투자신탁약관 변경 : Class 신설
6. 수탁고 추이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Class 통합펀드^주) 기준** (단위: 억원)
- | 연도 | 현재
2007.10.31 | 6개월전
2007.04.30 | 1년전
2006.10.31 |
|------------------|------------------|--------------------|-------------------|
| 수탁고 | 720 | 173 | 75 |
| 증가율 ^주 | +316.18% | +130.66% | - |
- 주) Class 통합펀드 : 모든 Class 의 수탁고를 합산하여 산정
증가율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전세계적으로 700 조원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Allianz 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저평가 가치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 138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Class C(H)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Bottom-up 분석에 입각하여 성장성(매출, 이익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상대수익가치 척도(PER, PBR, EV/EBITDA 등)상 저평가된 기업, 높은 ROE 와 견실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 등을 보유하였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기업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중 적극적으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잠재가치까지 시장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주주제안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하며,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하여 장기적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국공채 등과 투자자격 등급이상의 우량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함에 따라 투자자는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된 가격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주식거래정지등 포함)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의 주식에 투자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변동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높은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감안시 개별투자자의 전체 투자포트폴리오 중 일정부분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용목적을 감안하여 3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 자 등 급 안 내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30~60% 투자하는 경우
3등급	중간위험	주식에 30%이하 투자 또는 투자적격등급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4등급	낮은 위험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채권 및 어음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등)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Class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Class별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Class별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주기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Class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Class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allianzglobalinvestors.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 당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임으로 Class 별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상이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우	69년생	이사	14개	3,367억좌	KPMG LLP등 경력 12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Value-In-Action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연도	최근 1년 (06.11.01 ~ 07.10.31)	설정이후 (06.08.18 ~ 07.10.31)
Class A	69.70%	84.67%
Class C	68.38%	82.91%

벤치마크	46.14%	49.59%
------	--------	--------

※ 벤치마크 = 90% KOSPI + 10% Call loan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06.08.18 ~ 06.12.31)	최근 2년차 (07.01.01 ~ 07.10.31) ^{주)}
Class A	18.17%	56.27%
Class C	17.81%	55.26%
벤치마크	7.16%	39.59%

※ 벤치마크 = 90% KOSPI + 10% Call loan

주) 최근 2년차 연도별 수익률은 년초 이후 10개월간의 수익률임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A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매수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합계	납입금액의 1% +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 수익증권, Class I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및 Class C(H)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합계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2. 투자신탁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A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분의 8.5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분의 11.95	
	수탁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분의 21.10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분의 8.5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분의 19.95	
	수탁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분의 29.10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I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분의 8.5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50	
	수탁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9.65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W)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8.55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00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9.15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F)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8.55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50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9.65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E)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8.55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17.95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27.10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H) 수익증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8.55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18.95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15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0.1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28.10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예상수치입니다.

※ 1,000만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A 수익증권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8,366	771,125	1,249,449	2,566,781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 수익증권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5,550	934,590	1,588,331	3,337,211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E) 수익증권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4,550	872,174	1,485,391	3,137,842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G1호 - Class C(H) 수익증권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5,050	903,415	1,536,973	3,238,036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등(2006년 1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Class C(H)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 ※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lass A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② Class C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③ Class I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을 실지영의 법인으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④ Class C(W)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⑤ Class C(F)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을 간접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및 법시행령 제16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⑥ Class C(E)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⑦ Class C(H) 수익증권 : 투자자의 자격을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 ※ Class I 수익증권의 경우 추가설정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사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15시 이전(오후 3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5시경과 후(오후 3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약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되며, 간접투자증권 매입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5시(오후 3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I.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I.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환매절차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자가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제2영업일의 해당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제3영업일의 해당 Class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되며, 간접투자증권 환매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5시(오후 3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Class는 해당 Class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Class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Class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Class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Class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 Class C(H)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I.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 펀드운용계획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Bottom-up분석에 입각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 ✓ 성장성(매출, 이익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 ✓ 상대수익가치 척도(PER, PBR, EV/EBITDA 등)상 저평가된 기업
 - ✓ 높은 ROE와 견실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기업 등
- 포트폴리오 종목 중 적극적으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잠재가치까지 시장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한하여
 - ✓ 주주제안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
 - ✓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하여 장기적 자본이득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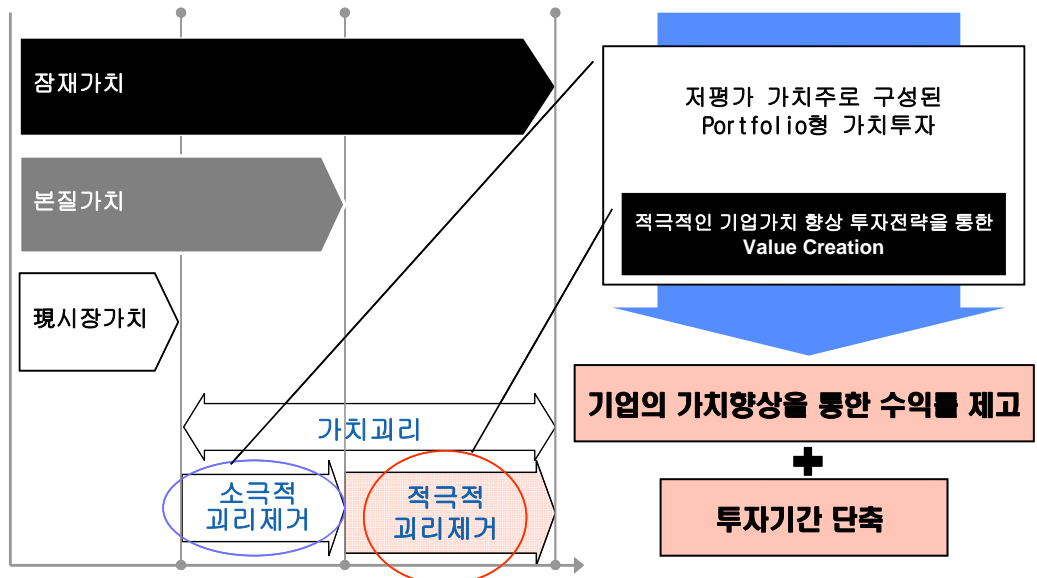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종목구성 기준

 <p>자산 과다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현금 또는 저수익 비영업자산 보유 • 낮은 자기자본 이익률과 PBR <p>⇒ 이들 중 비영업 자산에 대한 매각 + 현금배당 증대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 개선으로 기업가치 향상이 가능한 기업</p>	 <p>잠재된 핵심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역량은 있으나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경우 • 전략 부재로 인한 경영진에 대한 주가 할인 <p>⇒ 이들 중 저평가 요인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p>
 <p>턴어라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인 영업적, 재정적 위기 • 위기만 넘기면 강한 영업 모멘텀을 낼 수 있는 경우 <p>⇒ 이들 중 차입금 축소, 자사주 매각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투자로 기업가치 향상이 가능한 기업</p>	 <p>저평가 가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 부족으로 인한 저평가 • 경영진의 주식에 대한 관심 부족 <p>⇒ 이들 중 IR, 주주정책 개선 + 주식유동성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이 가능한 기업</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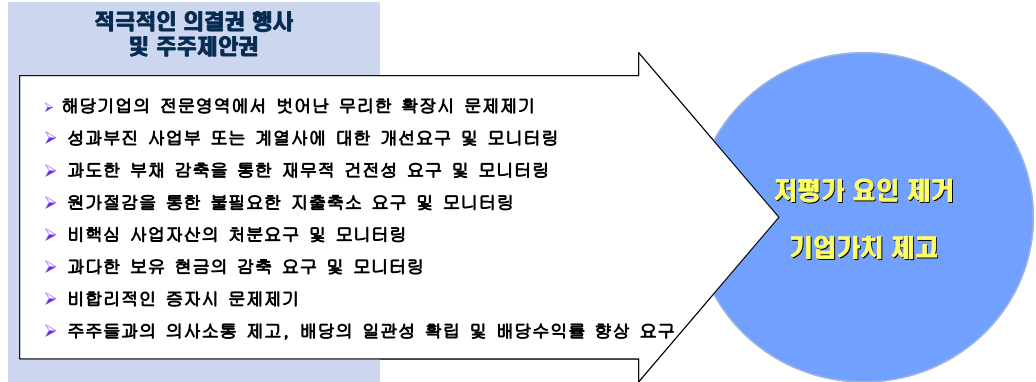
- 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 투자전략



- 저평가요인 분석 및 기업가치 향상 가능성평가의 원칙
 - 확고한 경영 원칙 (Discipline) : 내외로 천명한 경영의 원칙이 있는가?
 - 경영투명성 (Transparency) : 투자자들이 경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경영진 독립성 (Independence/accountability) : 이사회외 독립적인 결정이 가능한가?
 - 책임 경영 (Responsibility) : 경영진이 실적에 대한 책임지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공정성 (Fairness) : 소액주주에 대한 불이익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는가?
 -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 노사관계, 환경, 지역사회 기여 등

- 기업가치 향상 프로그램에서



2.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 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강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60%이상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100% 이하
	수익증권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은 30%까지 투자 가능
	주식및채권 관련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합니다.
-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약관 제3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약관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비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 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추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일부 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상환금 지급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효등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생명빌딩 18 층 02-2071-9900
회사연혁	2000. 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 주요 업무

- 의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2개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년도의
요약재무내용

과 목	당기	전기	과 목	당기	전기
	(06/04-07/03)	(05/04-06/03)		(06/04-07/03)	(05/04-06/03)
유동자산	25,748	25,055	영업수익	11,060	14,443
고정자산	3,268	2,945	영업비용	7,602	8,063
자산총계	29,016	28,000	영업이익	3,458	6,380
유동부채	1,155	1,666	영업외수익	0	302
고정부채	87	45	영업외비용	8	19
부채총계	1,242	1,711	경상이익	3,450	6,663
자본금	20,000	2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7,774	6,28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450	6,663
자본 총계	27,774	26,289	법인세비용	965	1,859
부채와 자본총계	29,016	28,000	당기순이익	2,485	4,804

4. 운용자산 규모

(06년 12월 31일)

(단위: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투자일임	총계
3,490	38	5,853	579	529	1,420	78,859	90,768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우	69년생	이사	14개	3,367억좌	KPMG LLP등 경력 12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Value-In-Action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 인력입니다.

※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회사 또는 투자신탁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T. 729-8000	1967.01 한국외환은행 창립
한불증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T. 02-777-7711	1977.07 회사설립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T. 1588-3322	1970.10 회사설립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T. 1544-5000	1974.09 회사설립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T. 1588-6200	1967.10 회사설립
신영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T. 2004-9000	1956.02 회사설립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T. 1544-0000	1969.01 회사설립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T. 2002-3000	2001.04 우리금융 그룹 출범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T. 3771-9000	1949.11 회사설립
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T. 1588-5050	1967.10 회사설립
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번지 T. 1566-1000	설립일 : 1967.09 자본금 : 13,095 억원 (2005.03)
전북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T. (063) 250-7114	1969.12 회사설립
SK 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T. 3773-8245	1955.07 회사설립
삼성증권(주)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종로타워 10층 T. 2020-8000	설립일 : 1982.04
동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T. 369-3000	1982.12 회사설립
HSBC은행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25 T. 1588-1770	1982 부산지점 설립 1984 서울지점 설립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

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 준칙

-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외환은행	www.keb.co.kr
한불증권	www.sogeko.com
대우증권	www.bestez.com
한국투자증권	www.hantutams.com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신영증권	www.shinyoung.com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교보증권	www.iprovest.com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한국씨티은행	www.citibank.co.kr
전북은행	www.jbbank.co.kr
SK 증권	www.priden.com
삼성증권(주)	www.samsungfn.co.kr
동부증권	www.winnet.co.kr
HSBC은행	www.kr.hsbc.com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국민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TEL) 02-1588-9999
 회사연혁
 2001.11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 국민은행으로 명칭변경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주)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TEL) 02-729-8402
 회사연혁 설립일: 2003년 4월 1일, 자본금: 25.5억원

2. 주요 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02-399-3350	설립일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나이스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인사동 43번지 T.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자본금 : 47.5억원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 제공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의결사항

수익자는 전체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Class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Class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집주체 및 통지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기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① 연기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잔여재산분배**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②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기준가격계산서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Class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가 매월1회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수탁회사가 수탁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약관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수탁회사의 변경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마.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 투자신탁 명칭 : AllianzGI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투자신탁 제 G1 호
- ◆ 판 매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